

# 2023년 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지원사업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(WISET)

R&D경력복귀지원팀

# 목차

- 1 2023년 중점 추진사항
- 2 지원 개요
- 3 지원 대상 및 자격
- 4 신청방법

## 지원 분야 확대 → 트랙1과 트랙2로 나누어서 지원

구분	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	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
지원 조건	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신규 채용 시	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인턴 3개월 채용 후 일반직 전환 시
지원 규모	신규과제 000개 내외	신규 5건 내외
지원 인원	활용책임자 1인당 2명	1개 기업당 1명

※ 트랙1과 트랙2 중복 지원 불가

※ 트랙2.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신청대상 중 선정되지 않은 경우

트랙1. 경력복귀 과제지원 후보군으로 활용(지원 조건은 트랙1과 동일)

# Part 2, [트랙1] 경력복귀 과제지원 개요

## 지원 규모

- 신규과제 **000개** 내외 지원
- 활용책임자 1인당 인력 2명까지 지원 가능 ※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, 조직적응 등을 지도, 관리하는 책임자

## 지원 기간

- 최대 **3년** ※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, 계속 지원여부 평가

## 지원 금액

- 인건비는 소속기관 지급기준을 따르되,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
- 정부지원금 5% 이상 연구활동비로 필수 사용
-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(공고문 참고1)

구분	학·석사	박사
정부지원금	최대 2,100만원/연 (175만원/월)	최대 2,300만원/연 (191.6만원/월)
기준연봉	3,000만원/연	3,300만원/연

## 참여 기관

-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

## 참여 인력
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, 사업신청일 기준 **고용보험 미가입자**
  - ※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, 계약직, 시간제 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(관련 증빙 제출 필수)
  - ※ 단, 학사(전문학사) 또는 비이공계 석·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
- **재도전 특별지원** :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, **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지원**
  - ※ 계속 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
  - ※ 잔여기간 최소 **6개월 이상**인 경우 지원 가능
- 참여인력은 **연구직, 기술직**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# [트랙2]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

## 지원 규모

- 신규과제 **5건** 내외 지원(1개 기업당 1명 지원 가능)

## 지원 기간

- 최대 **3년** ※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, 계속 지원여부 평가
- 인턴십 계약 3개월 이후 일반직(정규직 또는 계약직) 전환 필수**

## 지원 금액

구분	학·석사		박사	
	인턴십	일반직	인턴십	일반직
정부지원금	300만원	1,800만원	300만원	2,000만원
필수 연구활동비 5%	미적용	적용(90만원)	미적용	적용(100만원)
기준연봉	3,000만원/연		3,300만원/연	

## 참여 기관

-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

## 참여 인력
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, 사업신청일 기준 **고용보험 미가입자**
  - ※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, 계약직, 시간제 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(관련 증빙 제출 필수)
  - ※ 단, 학사(전문학사) 또는 비이공계 석·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
- **재도전 특별지원** :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, **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지원**
  - ※ 계속 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
  - ※ 잔여기간 최소 **6개월 이상**인 경우 지원 가능
- 참여인력은 **연구직, 기술직**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**신청 기간 : 2023년 2월 27일(월) ~ 4월 09일(일) 23:50**

**신청 조건 : 근무 예정 기관 또는 인력 확정 후 기관과 인력 함께 신청**

- 기관 또는 인력 단독 신청 불가
-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-인력 간 매칭을 위해 W브리ッジ 활용 권장

**신청 방법 : W브리ッ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([www.wbridge.or.kr](http://www.wbridge.or.kr))**

**신청 시 유의사항**

-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
- 제출 서류는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
-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

## 제출서류(인력)

인력

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필수여부
사업신청서	- W브릿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	필수
졸업증명서 사본	-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	필수
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	-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 <a href="http://total.kcomwel.or.kr">http://total.kcomwel.or.kr</a> ) 발급 - 개인 → 증명원 신청/발급 →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→ 고용, 상용 선택 후 조회 → 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→ 증명원 출력 - 개별사업장,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-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	필수
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	- 워크넷( <a href="http://www.work.go.kr">www.work.go.kr</a> )에서 발급 -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 하여 “3개월” 선택 →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처본 제출(전체화면 캡처) - 사업 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	필수
경력증명서	-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	해당시
근로계약서	-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-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	해당시
기타	-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해당시

## 제출서류(기관)

기관

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필수여부
사업신청서	- W브리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	필수
사업자등록증 사본	-	필수
기업자격요건 증빙서류 (대학, 공공연 제외)	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/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/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/ 이노비즈 확인서 / 연구소기업 등록증 /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- 상기 서류 중 택1	필수
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- 2020~2022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국세청 또는 회계사(세무사) 확인(원본/날인) - 2022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9~2021년 재무제표 제출 ※ 공공연, 대학 제외	필수
가점 증빙서류	-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/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/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/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※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	해당시

## 신청 제한 사항(인력)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  - ※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: 워크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 
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
  - 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 불가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신청기관의 기관장(사업주)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
  -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### < 친족관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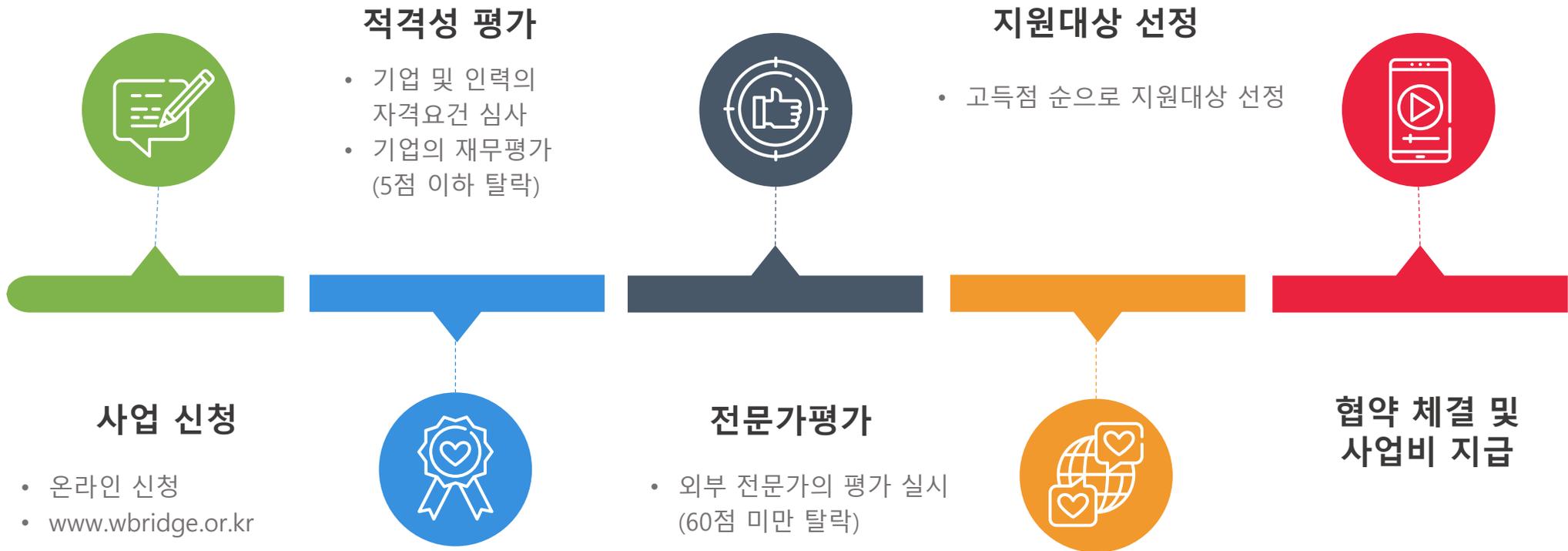
1. 6촌 이내의 혈족
2. 4촌 이내의 인척
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·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## 신청 제한 사항(기관)

기관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재제처분)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
-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3년 이상 채용이 가능해야 하며, '인턴'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기관 제외)
  - ※ 기업의 부도
  - ※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
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
  - ※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
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  - ※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 - ※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 - ※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## 지원 절차





**Q. 이공계 학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A. 자연, 공학, 의학계열 및 산업디자인계열 학위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, 수행 업무가 R&D 관련 업무여야 합니다.  
전공계열은 학위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.

**Q.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 중이거나 수료자인 경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?**

- A.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 중이라면 '학사'로 신청 가능합니다.  
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인 경우, 석사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박사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 후 참여 가능합니다.

**Q.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?**

- A. 고용기관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가능합니다.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(세부사항은 공고 참조)

**Q.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,  
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**

- A. 정부에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,  
고용을 전제로 하여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정부재정사업을 말합니다.
- B. 해당 내용은 기관이 아닌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C. 중복수혜 불가 사업 예시
  - ① 일자리 안정자금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 ③ 청년추가고용장려금
  -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등

※ 확인 방법: 워크넷([www.work.go.kr](http://www.work.go.kr)) 로그인 → 내 정보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조회

※ 일자리 참여내역 조회 기간 설정 시, 사업신청일자가 포함되도록 함

※ 단,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

역사의 가치를 되새기며, 과학의 미래를 열다

감사합니다.